

2021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축산법」 제1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농촌진흥청장

1.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장소공지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이의제기
필기시험	7. 7.(수) ~ 7. 13(화) (취소기간 7.7~16.)	8. 10.(화)	8. 28.(토)	9. 2.(목)	9.2. ~ 8. (7일간)
실기시험	9. 2.(목) ~ 9. 8.(수) (취소기간 9.2~10.)	9. 16.(목)	10. 2.(토)	10. 12.(화)	10.12. ~ 18. (7일간)

※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 유예기간이 없으니 응시생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시험 불합격 및 응시원서 미접수 시: 필기시험 재응시

○ 성적조회 및 합격증출력: 2021. 10. 12.(월) ~

○ 이의제기: 합격자발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마이페이지)을 통해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추가합격자 발표: 이의제기 기간 이후 해당자 개별 통보

2. 시험과목

구 분		과목명	비 고
1차	필기과목 (5과목)	축산학개론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 대상: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 * 시험면제 과목 1차(축산학개론,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2차(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2차	실기과목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 외국에서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응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서 받은 면허증 사본을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 바랍니다.

3. 시험방법

-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 실기시험: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필기·실기)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전부 회수합니다.

4. 응시자격

- 「축산법」 제12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축산법」 제12조제2항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개정 2019. 12. 31.>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응시료 안내

- 접수기간
 - (필기) 7. 7.(수) 09:00 ~ 7. 13.(화) 18:00
 - (실기) 9. 2.(목) 09:00 ~ 9. 8(수) 18:00
 - ※ 접수취소: (필기) 7. 7.(수) 09:00~16.(금) 18:00 / (실기) 9. 2.(목) 09:00~10.(금) 18:00
 - ※ 응시표 출력: (필기) 8.16.(월)~28(토) / (실기) 9.20.(월)~10.2.(토)
- 접수처: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
 - 응시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록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면허증 사본 jpg, gif 등 파일로 원서접수 시 등록
 - ※ 응시자가 접수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료: (필기) 25,000원, (실기) 30,000원 / 수수료별도
 -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 12. 31.)에 따라 응시료 인상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응시료 환불
 - 자체변심으로 인한 환불: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한 자에 한해서만 환불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환불

환불사유	환불금액	환불신청 기한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응시료의 100%	시험일 후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 첨부하여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원서접수 취소는 안내한 기간 내 취소 자에 한해 응시료 환불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 및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접수 시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cm×4cm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인정**이 되며 이 외에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등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응시원서 접수불가)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뒤 배경그림이 없어야 하며, 과도한 포토샵을 하지 아니하여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만료 후 별도 공지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자 및 손소독, 체온검사 거부자 시험장 입실 불가
 - ※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으로 입실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시험장소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09:20까지 입실)
-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구멍을 뚫어 마스크를 훼손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 응시생과 같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기간 내에 사전 신청을 하여,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확진자는 응시 불가)
 - 자가격리자 사전신청 기간: 8.20.(금) 09:00 ~ 8.26.(목) 18:00
 - ※ 별도시험장 응시 사전신청서[붙임1]와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https://ailicense.nias.go.kr>)
 - ※ 자가격리 응시자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별도 지정된 시험장소로 이동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나 119구급차 이동을 지원 요청
 - (실기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중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는 신청기간 내에 응시유예신청을 하면 차기 실기시험으로 응시유예 조치됩니다.
 - 확진 및 자가격리자 응시유예신청 기간: 9.24.(금) 09:00 ~ 9.30.(목) 18:00
 - 사전신청 및 응시유예신청 방법: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 신청

- 격리대상자 응시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진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최근 14일 이내 해외 국가를 방문한 경우 출입국 이력과 본인의 건강상태를 지체 없이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로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필기) 8. 25.(수) ~ 8. 27.(금) 18:00 / (실기) 9. 29.(수) ~ 10. 1.(금) 18:00
 - ※ 유선신고 /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000)
- 시험 당일 모든 시험장의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 시험장 입실 및 퇴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퇴실 시 인원 분산을 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이오니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시험실을 이용한 응시자는 타 응시자가 모두 퇴실한 이후 귀가가 가능합니다.
- 기침 및 발열(37.5℃ 이상)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 바랍니다.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으로 코로나19 의심증후가 있을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063-238-7000)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준수사항

- 필기시험(과목별 40점 미만 없이 평균60점 이상), 실기시험(60점 이상) 합격자 결정방법 등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축산법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본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하며, 모자 착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고등학생 이하 학생만 해당)

※ 공무원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 중 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 불가합니다.
- 본 시험의 시행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기시험 응시자는 가축인공수정사 실기시험에 적절한 복장 및 신발을 착용하여 주시고, 시험 도중 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책임은 시험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방역 및 본인확인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